

1. 세월호특별호 입법발의 현황

2014년 7월 10일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4·16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한 ①세월호침몰사고진상조사등에관한특별법안(김학용의원 등 27인, 의안번호 1911058, 2014.7.2.), ②세월호침몰사고피해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김학용의원 등 27인, 의안번호 1911050, 2014.7.1.), ③세월호침몰사고피해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김명연의원 등 26인), 의안번호 1910943. 2014.6.20.), ④세월호4·16사고반성과진상조사및국가재난방지체계혁신을위한특별법안(서청원 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1910621, 2014.5.15.)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주도한 ⑤세월호참사피해자등의지원을위한특별법안(김우남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1911093, 2014.7.7.), ⑥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 의안번호 1911080, 2014.7.4.), ⑦세월호침몰사고피해학생의대학입학지원에관한특별법안(유은혜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1911077, 2014.7.4.), ⑧세월호침몰희생자유가족과생존자의치유와회복을위한긴급지원법률안(장하나의의원 등 24인, 의안번호 1910604 2014.5.14.), 정의당 의원들이 주도한 ⑨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및안전사회전환을위한특별법안(정진후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910842, 2014.6.11.), ⑩세월호침몰사고피해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안(정진후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1910614, 2014.5.15.),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주도한 ⑪세월호침몰참사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및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안(이상규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911048, 2014.7.1.) 등이다¹⁾.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지원은 원칙적으로 단일포괄입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부득이 진상규명과 피해자지원을 별개 입법으로 분리하더라도 두 개의 법안은 국회에서 일괄 통과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치유와 기억을 위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은 뗄려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에서 가족대책위와 함께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범국민대책위의 세월호특별법이 마치 보상에 관한 특별법인 양 진실을 왜곡하고 있으나, 오히려 가족대책위 및 야당은 진상규명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여당이 오히려 피해자지원, 보상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본 의견서에서는 각 당의 진상규명에 관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집중하고, 피해자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따라서 위 ②③⑤⑦⑧⑩⑪법안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한다.

한편, 시민사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온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라고 한다)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세월호 특별법안의 기본원칙을 천명한다.

-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세월호참사의 전 과정을 조사범위로 하고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가 구성되어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가족대책위는 지난 7월 9일 1차로 3백20만명의 서명운동 결과와 함께 법률 대리인인 대한변협이 기초한 ‘4.16참사 진실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특별법안’을 입법청원의 방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여야대로, 변협은 변협대로 4.16. 세월호참사 이후 치열한 토론과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각자 나름의 최선의 안을 제출했을 것으로 믿고 있고, 따라서 국회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한 완벽한 진실규명, 지위 고하를 막론한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 마련, 피해자의 치유와 기억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향한 국민적 염원을 반영하기를 바란다. 민변은 각 당의 세월호특별법안이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잊지 않겠습니다”“꼭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는 전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지,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치유와 기억을 통해 안전한 나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담고 있는지에 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각 당의 세월호특별법안에 대한 총론적 의견

가. 4.16.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은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모든 국민의 진정한 치유의 길이고, 또 세월호참사 이전과 세월호참사 이후 완전히 달라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고, 따라서 마땅히 안전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까지로 발전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안, 새정치연합안, 정의당안은 가족대책위안과는 달리 4.16.참사의 진실규명과 함께 안전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4.16.특별법의 임무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나.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4.16.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4.16.세월호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임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적 보완책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안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만을 주된 업무로 설정해 진상규명의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지 못하고, 새정치민주연합안, 정의당안은 임의조사의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수사 및 기소권 부여에 있어서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가족대책위안에 비해 실효성 및 현실정합성이 떨어진다.

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가족대책위안, 새정치민주연합안, 정의당안은 진상규명 기구 구성에 있어 피해자단체의 참여만을 규정할 뿐 진상규명의 각 단계에 피해자단체가 어떻게 참여할 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 위원 추천, 위원회 의결, 조사 및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통제 등 피해자단체의 다양한 참여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